

인천지방법원 2024. 12. 20 선고 2024가단9357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22.

판 결 선 고 2024. 12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2024. 6. 30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(인정근거)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)

판사 김성대

별지